

교섭대상에 대한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효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8.27.(목) 조선일보, “호남 반도체 공장, 노동쟁의 대상 되나”

2. 설명 내용

- 고용노동부는 「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」에서 기업투자, 합병·분할·양도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·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
- 한편, 정부는 노동쟁의 대상을 시행령,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포함하여, 입법 체계, 실효성, 법적 안정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식과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음
- 전문가 및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,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노사 간 갈등을 예방·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임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	책임자	과 장	강승헌 (044-202-7611)
		담당자	사무관	서관범 (044-202-7609)